



구형 비행기 설계 자료의 정보자유법(FOIA)¹⁾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관련 과기환송심 사건

49

Taylor v. Babbitt, 760 F.Supp.2d 80 (201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워싱턴디씨 지방법원	사건번호	03-0173
판결 일자	2011.01.19	판결 결과	전부 인용
원고 (피항소인)	브렌트 테일러 (Brent Taylor)		
피고 (항소인)	제이. 랜돌프 배빗 (J. Randolph Babbitt), 미연방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페어차일드 코퍼레이션 (The Fairchild Corporation)		
참조 법령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5 U.S.C. § 552; FED.R.CIV.P. 56(c)		
참조 판례	Celotex Corp. v. Catrett, 477 U.S. 317, 322, 106 S.Ct. 2548, 91 L.Ed.2d 265 (1986); Pub. Citizen Health Research Grp. v. Food & Drug Admin., 704 F.2d 1280, 1288 (D.C.Cir.1983); Ruckelshaus v. Monsanto Co., 467 U.S. 986, 1002, 104 S.Ct. 2862, 81 L.Ed.2d 815 (1984); Nova Chems., Inc. v. Sekisui Plastics Co., 579 F.3d 319, 328 (3d Cir. 2009); MicroStrategy, Inc. v. Business Objects, S.A., 661 F.Supp.2d 548, 555 (E.D.Va.2009)		
영업비밀	구식 비행기 F-45의 설계 자료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FOIA, 공개 허락, 상업적 가치		

02 사건 개요

페어차일드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이하 ‘FAC’)은 1935년 피고 미연방항공국(이하 ‘FAA’)의 전신인 민간항공국에 F-45 항공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FAC는 페어차일드 엔진 및 에어플레인 코퍼레이션(이하 ‘FEAC’)에 합병되었다. FEAC는 1955년 민간항공국에 편지를 보내서 F-45를 수리하고자

1)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는 1966년에 제정된 미연방법으로, 연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인정한 법률이다.

하는 대중에게 F-45 자료를 대여하는 것을 허가하였는데, 현재까지 대중에게 F-45 자료가 공개된 적은 없다.

FEAC는 1971년 페어차일드 인더스트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페어차일드 인더스트리는 배너 인더스트리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배너 인더스트리는 피고 페어차일드 코퍼레이션(이하 '페어차일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 페어차일드는 페어차일드 인더스트리가 보유한 F-45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페어차일드의 완전 소유 간접 자회사(wholly owned indirect subsidiary)인 페어차일드 홀딩 코퍼레이션으로 이전하여 현재는 페어차일드 홀딩 코퍼레이션이 F-45 자료의 소유자이다.

F-45 소유자였던 그렉 헤릭(Greg Herrick)은 자기 소유의 항공기를 복원할 목적으로 피고 FAA에 F-45 자료를 정보자유법(이하 'FOIA')에 따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FAA는 피고 페어차일드가 공개를 반대했다고 통보하면서 FOIA의 예외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헤릭은 피고 FA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했으나 역시 패소하였다.

헤릭은 원고에게 F-45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FAA에 헤릭이 요청한 것과 동일한 F-45 자료의 사본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 FAA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FA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FAA는 청구 배척(claim preclusion)²⁾이 원고의 소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또는 대안적인 약식재판을 신청했고, 피고 페어차일드는 소송참가인(intervenor)로 소송에 참가하면서 약식재판을 신청했다.

피고들은 가상적 대표의 법리(doctrine of virtual representation)³⁾에 따라 원고가 헤릭과 이권공유관계(privity)⁴⁾에 있었으므로 헤릭에 대한 와이오밍 지방법원의 판결이 원고의 소를 금지한다고 주장하였고, 지방법원은 청구 배척을 근거로 피고들의 약식재판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항소법원은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량상소(certiorari)를 승인하고 항소법원이 가상적 대표 쟁점에 대해 내린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본 사건은 파기 환송 후의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 2) 이미 법원의 판단이 과거에 있었던 쟁점으로 동일한 쟁점에 대한 소송이 타 법원에서도 불가하다는 원칙을 말하며, "Res Judicata"라고도 한다.
- 3) 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한해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아닌 자의 이해관계가 당사자 일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당사자가 아닌 자의 이해관계가 당사자에 의해 법원에 충분히 설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 4) 당사자 간에 이권이 어느 정도 공유되는 관계

원 고	⇔ ⇐	피 고
F-45 자료는 비밀이 아니고 상업적 가치도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요청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FOIA 예외 4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페어차일드가 피고 FAA에게 F-45 자료 대여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비밀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피고 페어차일드가 해릭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고 FAA의 대여 권한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비밀성이 회복되었다.
F-45 자료는 75년이나 된 자료로서 항공기 생산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상업적 가치가 없다.		피고 FAA는 F-45 자료들이 현재 존재하는 F-45의 수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업적 가치가 있다.

04 판결 요지

자료 제출자가 정부에게 특정 정보를 대중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면 그 때부터 해당 정보는 더 이상 FOIA의 예외에 해당하는 비밀이 아니다. 피고 FAA는 피고 페어차일드가 피고 FAA의 공개 권한을 철회함으로써 비밀성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설령 비밀성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전임 회사가 1955년에 자료 공개를 허가하고 40년 후에 해릭의 FOIA 요청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권한 부여를 철회할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F-45 자료들은 비밀이 아니며 FOIA의 예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래된 정보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F-45 자료는 항공기 생산 산업에서 상업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또한 구형 항공기 시장에서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피고 페어차일드가 구형 항공기 시장에서 가지는 사업상 이권과 관련하여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 페어차일드가 구형 항공기 시장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래에 그러할 것이라는 주장도 없었다. 피고 FAA가 피고 페어차일드의 구형 항공기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F-45 자료 공개가 피고 페어차일드의 구형 항공기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상적 결론만 제시하는 것은 부족하다. 따라서 F-45 자료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고 FOIA의 예외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FAA의 약식재판 신청을 거절하고 원고의 약식재판 신청을 승인한다. 원고의 약식재판 신청을 승인하므로 원고의 증거 제시 절차 개시 신청은 쟁송성을 상실하여 거절한다.

05 Key Point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대중에게 공개를 하거나 공개를 허락하는 때에 비밀성을 상실하며, 한 번 상실된 비밀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상업적 가치는 그 보유자의 입장에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만일 다른 제3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있고 그럴 계획도 없다면,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경쟁상 이익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